

		<h1>보도해명자료</h1>	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 주거복지 로드맵		배포일시	2018. 4. 3(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 주택정비과	담당 자	·과장 유삼술, 사무관 유상철, 주무관 김준영 ·☎ (044) 201-3392, 3386	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중앙일보 “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” 관련

- 최근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 -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으며,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
 -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(분양가 상한제)에서 정하는 공사비·설계비·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,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 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4.3.) >

◆ 역대 수입산 주방가구도 개발비용?.. 슬그머니 느슨해진 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’
 -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하던 적정개발 비용 기준 없어서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(☎ 044-201-33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